「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첨단산업국장 조 영 열**
2. **제안이유**

가.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구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기술교류 및 지원으로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운영 업무 전반

1) 반도체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 추진

2) 반도체산업 기업 네트워크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

3)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반도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추진

5) 국내외 대표 박람회 참관 및 우수시설 견학 지원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00백만원(도비 180, 시비 420)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비고
600	271	299	3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6년구미시첨단산업국 공공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9.21.)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부서의견

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설립되었음.

나. 이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조성 및 세부육성 계획 수립·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3)「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4)「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6년도 성과평가 우수(88점) 및 자체감사 결과 이상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하여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이 2023년 10월에 출범하였으며,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24. 10월), 국방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사업 추진 업무협약(’25. 9월) 등 그간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기반구축, 기업 네트워크 지원, 인력양성 플랫폼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검증받았으나, 자체감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매년 수반되는 예산(연간 6억원 규모)의 적기 집행 도모와 함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요구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 비용추계서 상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